

<2015년도 지원심의 관련 감사보고서>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 잡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실은 2015년 9월 23일부터 동년 11월 11일까지 실시한 「2015년도 지원심의 관련 감사보고서」 내용 중 ‘공연예술창작산실 우수작품제작지원사업’과 관련된 감사 결과 중 잘못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로 잡고자 합니다.

1. 정정사항 : 특정 심의위원이 ‘자진 사업포기’ 최초 또는 유일한 제안자이었는지 여부

□ 문제가 되는 부분

○ 2015.6.21. 예술위 직원과 국립극단 백성희, 장민호 극장에서 만난 심의위원(AAA, 이의신청자)은 2015.6.18. 회의 당시 ‘사업포기’를 최초 제안하였거나 유일한 제안자가 아님에도 감사보고서에는 해당 심의위원으로 지목되어 있어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하였다.

○ 감사보고서(8~9쪽)에는 [표 1]과 같이 2015.6.18. 당시 회의에 참여한 심의위원(5명) 중 한 사람이 ‘○○○ 연출가를 만나 직접 우려를 표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라고 기술하고, 그 다음 문장에서 2015.6.21. 예술위 직원이 만난 심의위원 한 명을 특정하면서, “괄호()”로 부가 설명하였는데, 두 문장의 전후 문맥상 2015.6.21. 만난 심의위원이 ‘사업포기 의사를 물어볼 것을 제안’한 사람으로 오인·오해하게끔 기술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표 1] 2015년 감사보고서 잘못 기술된 부분

2015년 6월 18일 오전 10시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연극분야 심의위원들을 소집하여 우려를 표명하게 되었는데 그 날 논의 과정에서 위원 중 한 사람이 ○○○ 연출가를 만나 직접 우려를 표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 생략 ... 한편, 2015년 6월 21일에는 담당자들이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위원 중 한 사람(○○○ 연출가를 만나라고 제안한 위원)을 만나 ○○○ 연출가의 사업포기와 관련하여 의논하였고 ... 생략 ...

□ 검토결과 확인되는 사실

○ 예술위 감사실은 2015년도 감사 관련 증거자료,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이의 제기한 심의위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5년 당시 감사자료에서는 2015.6.21. 예술위 직원이 만난 심의위원(이의신청자)이 사업포기 제안을 한 사람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2015.6.18. 회의에서 ‘○○○ 연출가의 자진 사업포기’ 발언을 최초로 제안하거나 또는 처음 발언한 사람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 다만 이의신청인도 블랙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와 같이 ‘예술위 직원이 ○○○ 연출가를 만나 상황을 설명, 설득하여 ○○○ 스스로 사업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에 동의하였으며, 회의 중반 이후 이의신청인이 ○○○ 연출가의 근황, 심경을 전언으로

전달하였는데, 다른 심의위원들에게는 '7개 선정단체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 연출가가 사업포기를 감내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사결정에 기대를 더하게 되었다.

□ (참고) '자진 사업포기 확인' 발언의 상황 및 배경 설명

○ 2015.6.18. 재소집된 심의위원들은 예술위 직원들로부터 정부의 지시로 심의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위원 전원은 ▷2개월이 경과 되어 심의결과 변경은 불가능하고, ▷심의위원으로서 책임감, ▷공연계 우려 및 반발 예상, ▷향후 동일사례 발생 염려 등 여러 문제점을 피력 후 '당초 지원결정 번복은 불가'함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 회의 중반, 예술위 직원들이 재차 이런 상황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으나, 예술위가 처한 상황에서 ○○○ 연출작품이 제외되지 않을 시 심의결과 발표가 계속 어려울 것이고, 그로 인해 7개 선정단체마저 연내 지원받지 못할 수 있는 현실적 상황 등을 토로하자,

○ 심의위원들은 고심 끝에 '심의결과는 번복 없이 그대로 유지'하되, ○○○ 연출가 본인이 현 상황 등을 인지하고 있고, 7개 선정단체만이라도 연내 지원받기 위해서는 ○○○ 연출가의 자진 사업포기 결정만이 당시 처한 상황을 우선 수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사업포기' 발언은 심의위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7개 선정단체만이라도 지원받게 하기 위한 현실적인 타개책으로 나온 것이며, ○○○ 연출가의 결정이 우선해야 함에 따라 심의위원들은 '예술위 직원들에게 ○○○ 연출가를 만나 당시 처한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여 결정토록 한 것'이다.

2. 정정사항 : 사실과 달리 예술위 직원들의 개인적 '돌출행위'로 기술한 부분

□ 문제가 되는 부분

○ 이의신청 내용 검토 중, 2015년 10월 경 감사를 받은 예술위 직원들은 당시 감사에서 지원배제 지시 등을 사실대로 진술하였음에도 조직 차원의 결정에 의해 개인적 일탈 등 사유로 징계받은 것으로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구하였다.

○ 2015년도 감사는 국회 교문위 요청으로 실시한 예술위 자체감사로, 감사보고서(9~10쪽)에는 예술위 직원들이 심의결과를 예술위 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심의결과 번복 및 사업포기서(각서)를 받는 등의 일련의 행위를 '개인적인 돌출행위'로 [표 2]와 같이 적시하여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

[표 2] 2015년 감사보고서 문제 부분

(9쪽 하단) 그런데 ◇◇◇◇본부장 BBB과 ◆◆◆◆부장 CCC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심의를 통과한 ('15.4.11) 작품(극단 ○○○의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을 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소관 부서장이 개인적으로 문제점을 예상하여 지원심의위원을 만나고('15.6.18) 당사자인 ○○○을 만나('15.6.18., 6.22) 우려를 표명한 행위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10쪽 하단) ① ... 생략 ... 부적절한 행위로 직원복무규정과 윤리지침을 위반한 전 예술진흥본부장 BBB과 전 창작지원부장 CCC을 인사관리규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결과 확인되는 사실

○ 예술위 직원들은 당시 감사과정에서 ▷정부의 지원배제 지시 및 위원장(HHH)에게 보고한 사실, ▷당시 위원장이 지원심의위원회를 재소집하여 심의결과를 변경하라는 지시, ▷○○○ 연출가의 사업포기 의사를 전달하자 위원장이 '말은 믿을 수 없으니 사업포기 각서라도 받아 오라'고 질타한 사실 등은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된다.

○ 예술위 직원들은 2015년 10월경 감사부의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예술위는 2015.10.7.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 연출가에게 사업포기서(각서)를 받아 오라는 지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내용과 같은 기조로 두 사람의 개인적인 돌출행위로 결론을 내고 징계처분하였다.

○ 당시 위원장과 감사도 지원배제 등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국회에서조차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조직차원의 결정이 있었기에 예술위 직원들은 상기와 같이 사실과 다른 감사결과와 징계처분을 수용한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실은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일반국민과 피감사자의 권리구제 및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하여 2015년도 감사보고서 중 잘못된 적시된 부분을 정정하고자 위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3. 1.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